

전주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12006 판결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및 사해행위 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피 고 1. 주식회사 B
2. C(개명 전 : D)
3. E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31,874원과 그 중 18,869,550원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24,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 2020. 1. 1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E은 피고 C에게 전주지방법원 임실통기소 2020. 1. 15. 접수 제5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11. 3.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고 카드를 이용한 각종 거래를 하며 거래한 대금을 다음 달에 자동대체결제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 C은 2017. 3.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위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2,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초순경 자금사정 악화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0. 4. 26. 기준 원리금 합계 24,431,874원(그 중 원금은 18,869,550원)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아래 나항의 매매예약 계약 체결 이전인 2017. 3. 24.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F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20. 1. 15. 당시 68,174,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해 보증채무 2,400만 원, 피고 E에 대해 대여금 약 3억 원, G조합에 대해 대출금 3,900만 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은 2021. 1. 15. 피고 E에 대한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과 사이에 매매예약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E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무자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피고 C이 2019년도에 18,842,550원, 2020년도에 25,153,481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고 있고 현재까지도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사건 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위와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월 150만 원~200만 원 정도의 소득인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급료,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의 1/2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인 월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의 위 급여 소득 중 185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어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은 매우 적어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피고 C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책임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5,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4,68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8,174,000원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6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차액인 21,374,000원 상당액은 여전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피고 C의 재정상태에 대해 알지 못했고 정당한 채권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E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위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별 지 (부동산목록)

1. 전라북도 임실군
2. 전라북도 임실군
3. 전라북도 임실군
4. 전라북도 임실군
5. 전라북도 임실군
6. 전라북도 임실군
7. 전라북도 임실군
8. 전라북도 임실군
9. 전라북도 임실군
10. 전라북도 임실군



대189㎡

임야79㎡

임야47㎡

임야106㎡

임야34㎡

임야105㎡

임야34㎡

임야51㎡

임야111㎡

임야6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관계.

가. 신용카드입회신청

피고 주식회사 B는 아래와 같이 원고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고 회원약관에 따른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기업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를 이용한 각종거래를 하며 거래한 대금을 다음달에 자동대체결제방법에 의하여 원고은행에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 아 래 -

구분	회원명	회원신규일	카드번호	결제일	연대보유인	근보증한도액
기업	(주) B	2015. 11. 03.	(신용카드번호 1)	22	D	24,000,000
연체이율 2020.04.26.현재	일 시 불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 기준금리 + 3% 30일초과 90일이하 : 기준금리 + 4% 90일 초과 : 기준금리 + 5%				
	할 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 기준금리 + 3% 30일초과 90일이하 : 기준금리 + 4% 90일 초과 : 기준금리 + 5%				

나 신용카드사용의 내용

원고는 신용카드사용에 있어 신용카드 기업회원규약 제9조(기한전의채무변제 의무)에 의하면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를 연체할 경우에는 본 약정은 해지되며 그 채무액과 부채채무에 대하여 완제일까지 은행이 정하는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다. 책임의 발생

피고 주식회사 B는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연체 개시되어 신용카드 기업회원규약 제9조(기한전의채무변제 의무)에 의거 기한이익을 상실되었는바, 아래와 같은 카드사용대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 04. 26. 현재 (단위: 원)

카드 번호	상환할 원금	가자금금	미수이자	합계금
(신용카드번호 1)	18,869,550	325,960	5,236,364	24,431,874

라. 결론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는 위 신용카드거래 약정계약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